



## 보도자료

배 포	2020. 6. 12.(금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서 기 관	유대규(☎043-719-3316)

## 6월 12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## 오늘 총 705만 7천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6월 12일 공적판매처**를 통해 공급 되는 **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**하였습니다.
  - **오늘(6.12.)** 공급되는 마스크는 **총 705만 7천개**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기타*
6.12.(금) 공급예정량	705.7	461.3	1.6	5	125	112.8

- \* 대구시 48.4만, 부산시 15.5만, 인천시 23.2만, 충청북도 25.7만
-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<sup>●</sup>약국과 <sup>②</sup>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<sup>③</sup>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- □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, 18세 이하 (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)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- **공평한 구매**를 위해 **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**되므로, 마스크를 구매할 때 **공인 신분증을 지참**(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)하여야 합니다.







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
<첨부>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





##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			
<b>1</b> 모든 가족(동거인)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확인)			
❷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			
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			
4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			
<b>⑤</b>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	

\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 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